

제 1124 호
1985.6.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임 보 현
 편집인 : 공 보 관 조 남 호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 조 례
 제 2008 호 : 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3
- ◎ 고 시
 제 431 호 : 도시계획사업 (시의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변경허가
 (제 3 차) 4
- ◎ 공 고
 제 370 호 : 주택개발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5
- ◎ 사 령
- ◎ 출석통지서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29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㉞
1985. 6. 29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008 호

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위원장은 구청장"을 "위원장은 부청장"으로 한다.

제12조중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거나 교부받은 건축물"로 한다.

제13조중 "대상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 교부전에 국유재산법"을 "대상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소유자"를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거나 교부받은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용도지역별가중치

용도지역 등급	(1)	(2)	(3)	(4)	(5)	용도지역 등급	(6)	(7)	(8)	(9)	(10)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주거전 용지역	전용공 업지역	자연녹 지지역	생산녹 지지역	기타 지역
170이하	0.70	0.60	0.55	0.50	0.50	89이하	0.40	0.40	0.30	0.20	0.20
171-199	0.73	0.63	0.58	0.53	0.53	90-137	0.43	0.43	0.33	0.23	0.23
200-231	0.76	0.66	0.61	0.56	0.56	138-170	0.46	0.46	0.36	0.26	0.26
232-244	0.80	0.70	0.65	0.60	0.60	171-199	0.50	0.50	0.40	0.30	0.30
245-251	0.84	0.74	0.69	0.64	0.64	200-231	0.54	0.54	0.44	0.34	0.34
252-257	0.88	0.78	0.73	0.68	0.68	232-244	0.58	0.58	0.48	0.38	0.38

용도지역별 토지등급별	(1)	(2)	(3)	(4)	(5)	용도지역별 토지등급별	(6)	(7)	(8)	(9)	(10)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주거전 용지역	전용공 업지역	자연녹 지지역	생산녹 지지역	기타 지역
258-262	0.92	0.82	0.77	0.72	0.72	245-251	0.62	0.62	0.52	0.42	0.42
263-265	0.96	0.86	0.81	0.76	0.76	252-257	0.66	0.66	0.56	0.46	0.46
266 이상	1.00	0.90	0.85	0.80	0.80	258 이상	0.70	0.70	0.60	0.50	0.5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31 호

도시계획사업 (시의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변경 허가 (제 3 차)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73 호 (83.9.9) 로 도
시계획사업 (시의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
행허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712 호
(84.12.1) 호로 1차변경 및 동고시제 69 호
(85.2.5)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 허가
된 (2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83-1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와 제 8 조의 규정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의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시행변경허가 (제 3 차) 하였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6. 29.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

봉동 8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의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전 : 서울망우시의버스정류장 시설
공사

변경후 : 서울 상봉 시의버스정류장
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연건축면적 :
변경사항 없음

부지면적 : 변경전 - 36,364 ㎡

변경후 - 37,964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변경사
항 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변
경사항 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동대문구 상봉동 402 의 1, 402 의
2 도로폐지면적 1,600 ㎡ 추가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이해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증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특별시

공사설계도서 : 별첨도면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70 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제 470호 (73.12.1)로 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제 343호 (78.11.11)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429호로 (85.6.28)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주택개량 재개발 하왕제 1구역 1지구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동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들로 부터 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가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

고기간에 성동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1985. 6. 29.
서울특별시장

가. 공고내용

- 1) 사업의 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 2)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하왕제 1구역 1지구 재개발조합
 -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
 -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145 일대 : 25,419 평방미터
 - 4) 사업시행계획
 - 아파트 13층 - 15층 5동 430세대
 - 상가 3층 1동
 - 5) 정관 : 내용 생략
- 나. 공람공고기간 : 85.7.3-85.8.2(30일간)

사 령

◎ 1985년 7월 1일자

령제 230 호

성명	발령부서	호봉	직급
이 남 구	용산구	2	지방토목기원보시보
이 문 연	도봉구	3	"
최 순 구	도봉구	3	"
한 상 권	성동구	3	"
이 강 호	강서구	3	"

7-6 세 1124 호 시

보 1985.6.29

청 명	발 령 부 서	호 봉	직 급
신 동 진	강남구	2	지방건축기원보시보
김 영 신	도봉구	5	'
이 상 국	성동구	3	'

◎ 1985년 6월 29일자

령제 231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순 직	사회정화위원회 파견근무 (85. 6. 29-86. 6. 30)	내 무 국	지방서기관
유 기 탁	국회사무처 내무위원회 파견 근무 (85. 6. 29-86. 6. 30)	기획관리실	지방행정사무관

서 울 특 별 시 장

◎ 1985년 6월 27일자

령제 232호

이 명 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대 령 령

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근무를 명함
(85. 6. 27-89. 12. 31)

서 울 특 별 시 장

인 적 사 항	성명	공 배 영	소 속	종로구 주택과
			직 명	지방행정서기
본 적 주소	본적	경남 밀양 하남읍 수산리 75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71의13 9/2		
출석이유	징계 협의			
출석일시	1985년 7월 23일 10시 00분			
출석장소	부 정 장 실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1985년 6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종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인)</div> 공배영 귀하				
----- 권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소	본적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19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인)</div> 종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